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  
**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**  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수신     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 
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
참조      시설관리 담당

제목      「물류정책기본법」 하위법령 공포 알림



1. 한공조 2017 - 520호[「물류정책기본법」 하위법령 개정(안) 업계 건의 의견 반영 주요 내용 알림]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가 '18.3.19 공포한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은 조합 건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'18.3.22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GPS단말장치는 별도 고시 시행 이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구 분	최초개정(안) (‘17.8.31)	조합 건의(안) (‘17.10.10)	수정(안) (‘17.10.26) 및 공포 (‘18.3.19)
가. 위험물질종류	지정폐기물	지정폐기물 중 액상폐기물	지정폐기물 중 액상폐기물 및 금속성 분진·분말
나. 위험물 최대 적재량	5,000kg 이상	10,000kg 이상	10,000kg 이상
다. 운송계획정보 입력	예외없이 전부 입력	올바로 입력 시 입력 간주	올바로 입력 시 입력 간주

※ 「물류정책기본법」 하위법령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(자료광장-법령광장)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: 「물류정책기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」 국토교통부 공문 1부. 끝.

**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**



담당 협조자	박종윤	팀장	한인성	사무국장	장기석	부이사장	진원기	이사장
시행	한공조 2018 - 119호		(2018. 3. 27)		접수			
우	0757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, 11층(등촌동, 우리벤처타운)							/ www.krema.kr
전화	02-718-7900				전송	02-718-7171	/ krema@krema.kr	/ 비공개